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관련 특례법 제정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71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법 제정의 필요성	5
2. 제정안의 체계	11
3. 주요 조문별 검토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 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21.
3. 회 부 일 : 2024. 1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장애인학대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2018년 3,658건 대비 35.5% 증가하였고, 장애인학대 중 장애인학대행위자가 배우자 및 부모인 경우는 25%, 여기에 지인과 동거인의 경우를 합하면 그 비중이 52%에 달하는 등 친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대가 심각한 수준임. 또한, 2022년 7월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와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적시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조치가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음.

현재 기존 법령은 장애인학대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대하여 선언적 의미에 그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실무에 적용이 어렵고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에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등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인,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범죄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장애인학대살해·치사 및 장애인학대중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학대행위자와 장애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학대행위를 가중처벌함(안 제9조).

- 마.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사.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9조).
- 아.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20조).
- 자.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차.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 카.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4조).
- 타. 법원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6조).

파. 임시조치 불이행,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강요행위 및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

가. 제정의 취지

- 제정안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임.

나. 제정의 필요성

-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범죄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별법상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범죄행위에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형법」은 일반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족 구성원 간 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각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각 법률이 적용됨.

□ 다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장애인 대상 범죄와 그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별개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규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함.¹⁾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 법률 제정과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안전망의 강화가 다시금 강조되고 있음.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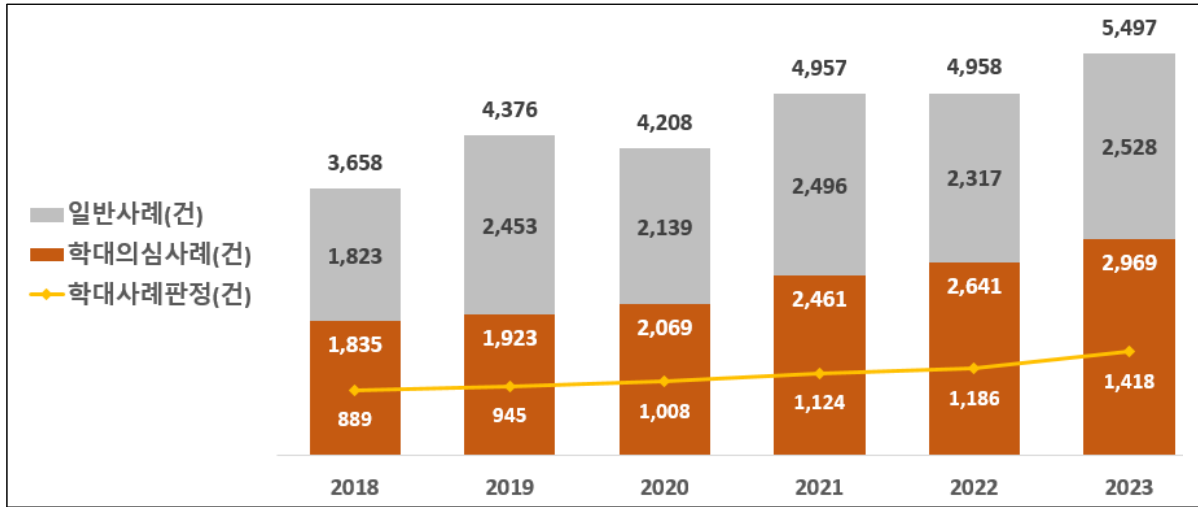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는 2023년 5,497건으로, 이 중 학대 의심 사례가 2,969건(54.0%), 일반 사례가 2,528건(46.0%)임.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18년 3,658건이던 전체 신고 건수는 2023년 5,497건으로 5년만에 1.5배가 되었고, 특히 학대 의심 사례는 동 기간 연평균 10.1%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실제 학대사례 판정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 2023년 학대사례 판정 건수는 2018년 889건 대비 1.6배 수준인 1,418건임.

1) 제19대국회(2012-2016)에서는 2015. 10. 16. 김기선의원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1917232호)을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한 바 있으나 심사중이던 2016. 5. 29. 제19대국회의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 임기만료폐기되었음.

2) 김예지의원실 외 9개 의원실 등,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23.4.28.) 자료집 p.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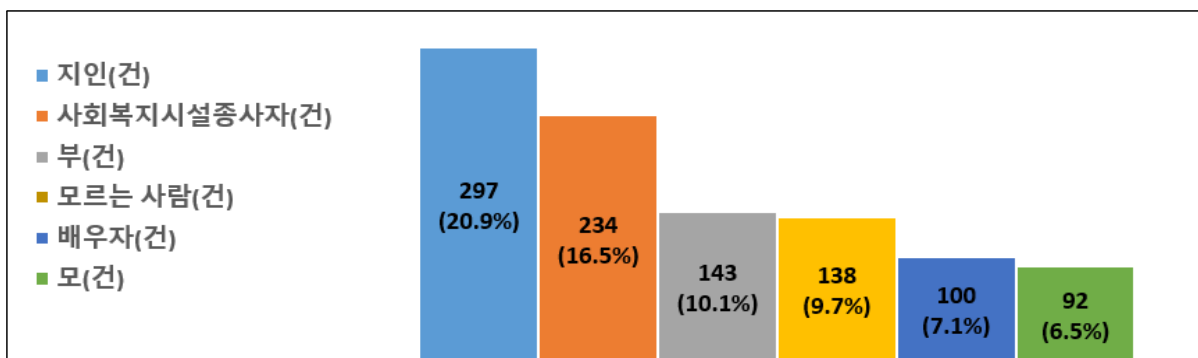
< 장애인학대 신고 및 판정 건수(2018-2023) >



출처 :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2024. 11.) p. 28.

- 2023년 학대사례 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학대행위자는 타인 39.9%(566건), 가족 및 친인척 35.0%(497건)임. 세부적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9%(297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5%(234건), 부(父) 10.1%(143건), 모르는 사람 9.7%(138건), 배우자 7.1%(100건), 모(母) 6.5%(92건)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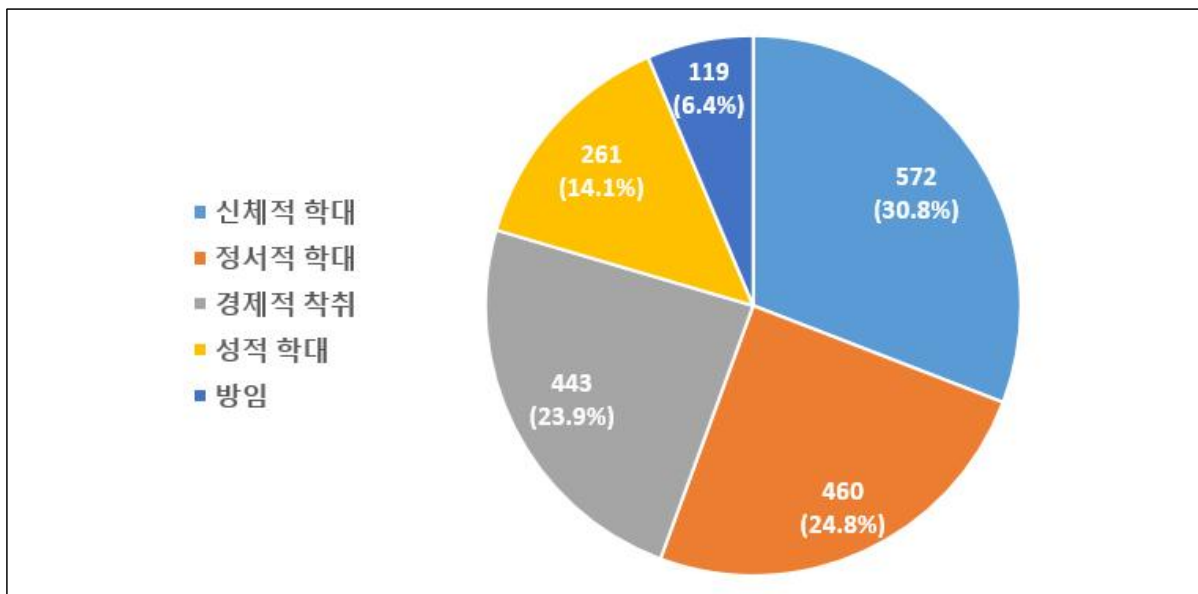
< 학대 판정 사건의 학대행위자 유형(2023) >



출처 :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2024. 11.) p. 30.

- 2023년 학대사례 판정 사건을 중복을 허용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30.8%(572건),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성적 학대 14.1%(261건), 방임 6.4%(119건)의 순임.

< 학대 판정 사건의 학대 유형 (2023) >



출처 :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2024. 11.) p. 30.

-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학대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피해 수준도 심각한 경우가 있어 장애인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별도의 처벌법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학대 예방·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³⁾

3) 김예지의원실 외 9개 의원실 등,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23.4.28.)

- 다만,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할 것인지는, 학대의 대상별로 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 기존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순이나 충돌을 야기할 우려는 없는지, 특례법상의 특례가 평등원칙, 비례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大韓民國憲法」과 「형법」상의 여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학대범죄’ 등의 정의는 現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정의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에 따라 해당 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에 있어서는 양자의 규율이 중첩될 소지가 있음.
- 법원행정처는, 학대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그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 기존 「장애인복지법」상의 처벌규정 등도 통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장애인학대 관련 규정이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장애인학대처벌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인복지법」상 유사·중복 규정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2.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① 장애인학대살해·치사 등의 가중처벌, ② 법정 대리인 등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③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하는 고소에 대한 특례, ④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⑤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 ⑥ 피해장애인보호명령 등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등을 두고 있음.
- 구체적인 규율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특정 대상에 대한 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의 일반적 적용에 예외를 허용하는 처벌 및 절차상의 특례와 보호조치를 규정하여 그 취지와 체계가 유사한 법률로는,
 -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고소에 대한 특례,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등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음.

< 제정안의 조문 체계와 유사 규정 >

제정안		비 고	
§1	목적	아동 §1	목적
§2	정의	아동 §2	정의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성매매 §3	국가 등의 책무
		장애인 §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 등	형 §289	인신매매
		형 §292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6	장애인학대살해·치사	아동 §4	아동학대살해·치사
§7	장애인학대중상해	아동 §5	아동학대중상해
§8	상습범	아동 §6	상습범
§9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 §7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10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성폭력 § 20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1	「형사소송법」 적용의 특례	-	
§12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아동 §8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3	친권상실청구 등	아동 §9	친권상실청구 등
§14	장애인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 §10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장애인 §59-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15	불이익조치의 금지	아동 §10-2	불이익조치의 금지
		장애인 §59-5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6	장애인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 §10-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 §59-6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17	고소에 대한 특례	아동 §10-4	고소에 대한 특례
§18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성폭력 §21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9	장애인학대범죄 전담조사제	성폭력 §26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20	필수적 공판준비절차	국민 §36	공판준비절차
§21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 §16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장애인 §59-15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22	보조인	아동 §48	보조인
		장애인 §59-8	보조인의 선임 등
§23	장애인학대범죄의 조사·심리	아동 §44	준용
§24	관계기관 등의 협조	-	
§25	현장출동	아동 §11	현장출동

제정안		비 고	
§26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아동 §1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장애인 §12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27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아동 §1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28	임시조치의 청구	아동 §14	임시조치의 청구
§29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아동 §15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30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아동 §19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31	임시조치의 고지	아동 §20	임시조치의 고지
§32	임시조치의 집행	아동 §21	임시조치의 집행
§33	임시조치의 변경	아동 §22	임시조치의 변경 등
§34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아동 §25	검사의 결정 전 조사
§35	항고와 재항고	아동 §45	항고와 재항고
§36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명령	아동 §47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37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아동 §50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38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기간	아동 §5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39	피해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아동 §52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40	이행실태의 조사	아동 §53	이행실태의 조사
§41	항고와 재항고	아동 §57	항고와 재항고
§42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아동 §23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43	비밀엄수 등의 의무	아동 §35	비밀엄수 등의 의무
		장애인 §85-2	비밀 누설 등의 금지
§44	임시조치 등의 불이행죄	아동 §59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45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 §60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46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아동 §61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47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아동 §62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장애인 §86	벌칙
§47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아동 §62-2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장애인 §86-2	벌칙
§48	과태료	아동 §63	과태료
§49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 §64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 주. 1. 국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3. 성폭력: 성폭력처벌법
4.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5.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6. 형: 「형법」

□ 한편, 제정안은 별도로 장(章)을 두지 않고 개별 조문만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법률의 조문 수가 많은 경우 내용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사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에도 총칙, 처벌에 관한 특례,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자 보호명령, 벌칙 등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개의 장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학대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및 제254조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제1항·제2항, 제261조 및 제262조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7장 낙태의 죄 중 제270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제1항·제2항, 제273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 죄 마.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80조 및 제281조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제1항·제2항, 제284조 및 제286조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 제288조, 제289조 및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 및 제294조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1조의 죄 차.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의 죄 카.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2조의 죄

제 정 안

- 파.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 제356조 및 제357조의 죄
- 하.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의 죄
- 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너.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87조제1호의 죄
- 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 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 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 버. 가목부터 머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서.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
4. “장애인학대범죄신고등”이란 장애인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장애인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학대행위자”란 장애인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7.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8.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말한다.

□ 안 제2조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상해·폭행, 유기·학대 등의 범죄를 장애인학대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⁴⁾ 제정안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임.

○ 이러한 제정안의 태도에 대하여는, 장애인 여부의 판단을 의료적 평가에 의존하여 보호대상인 장애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⁵⁾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5) 김남희,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김예지의원실 외 9개 의원실 등 (2023. 4. 28.), pp. 45-46.

- 그러나 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여부는 범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내지 처벌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범죄의 태양 및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이기만 하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안 제2조제2호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와 유사한 내용을 장애인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학대범죄’의 범위에는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에서는 주거·신체의 수색에 관한 제321조만, 같은 법 제41장 장물의 죄 중에서는 재물손괴 등에 관한 제366조만이 포함됨.
- 그러나 그 불법성에 비추어 장애인학대범죄의 범위에서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 중손괴 및 특수손괴 등을 제외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경찰청은 안 제2조가 ‘범죄피해자’로서의 장애인을, 복지와 지원에 관한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과 동일하게 정의하여 모든 장애인이 이 법에 따른 특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유사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중증도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는 행위의 주체·유형에 따라 각각 한정하는 등 적용 대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별도의 범죄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학대범죄의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적·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재원 조달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제1항), 국가의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통계 작성 및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음(제2항).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동법 제9조),⁶⁾ 안 제3조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6)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은 처벌 관련 특별법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있음.⁷⁾

7) 「성매매 알선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4조)

제 정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안 제4조는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예컨대, 가족구성원 간의 장애인학대범죄에 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음. 그러므로 제정안과 다른 법률 중 어느 경우에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라도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⁸⁾

8) 아동학대처벌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법원행정처는, 제정안의 보호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유사 법률의 보호조치와 다르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그 결과 다른 형사특별법과의 적용 관계에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 경찰청도,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제정안과 유사한 보호조치가 규정되어 있어 법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처럼 법률 적용의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 등(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장애인에 대한 인신매매 등) ①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장애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안 제5조는 「형법」 제289조 및 제292조 등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있음.

「형법」 제289조는 인신매매를 단순 인신매매(제1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제2항), 노동력 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제3항) 및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제4항) 등으로 나누고, 각각 7년 이하(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제2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제3항·제4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⁹⁾

같은 법 제292조는 인신매매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제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⁰⁾

9)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0) 「형법」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안 제5조에서 「형법」 제292조와 유사한 행위에 3년 이상의 징역을, 「형법」 제292조와 유사한 행위에 5년 이상의 징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행위 대상이 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처벌을 강화한 것임.

- 다만, 안 제5조는 인신매매의 목적에 대하여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유사한 것이나,¹¹⁾ 열거된 외에 다른 목적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등(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명확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 다. (생략)

마. 장애인학대 살해·치사 및 중상해(안 제6조 및 제7조)

제 정 안
제6조(장애인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3호나목·라목 및 마목의 장애인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3호나목·라목 및 마목의 장애인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장애인학대중상해) 제2조제3호나목·라목 및 마목의 장애인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 제6조와 제7조는 장애인학대살해·치사와 장애인학대중상해의 법정형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와 똑같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음.¹²⁾
-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아동학대범죄를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¹³⁾에 의한 학대로 제한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의 주체가 ‘보호자 등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중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2)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따라서 제정안에 따른 장애인학대범죄의 주체가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학대살해·치사 또는 장애인학대중상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범죄의 주체를 구분하는 등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법원행정처도, 제정안의 장애인학대살해·치사 및 중상해는 주체의 제한이 없음에도 그 법정형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아동학대살인·치사 및 중상해 등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경찰청은, 안 제6조가 장애인 살해 등을 「형법」상의 보통살인죄 등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¹⁴⁾ 그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중한 처벌이라는 제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형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미수범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4) 「형법」상 보통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바. 상습범(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3호 가목부터 버목까지의 장애인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 제8조는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제1항이나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등과 같은 태도임.¹⁵⁾
- 다만, 제정안의 장애인학대범죄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에 「형법」에 따른 부동의낙태죄와 그 치사상죄(동법 제270조 제2항·제3항)와 장애인학대살인·치사 등의 죄를 추가한 것이므로, 상당 부분 중첩됨. 따라서 안 제8조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경우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중 어느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5)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과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가중처벌(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법정대리인 등에 대한 가중처벌)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장애인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법정대리인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도 포함한다)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람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및 그 밖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의 보육교직원 6.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7.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순회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활동지원인력

□ 안 제9조는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등 열거된 특정 직군에 종사하는 자의 장애인학대범죄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그러나 장애의 종류와 정도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을 가중하고자 하는 것은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한 특정 직군인 경우에는 일정 신분만 있으면 보호·감독하지 않는 장애인 즉,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하였을지라도 가중처벌하게 되므로, 불합리한 면이 있음.

참고로,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기의 보호·감독받는자에 대한 범죄 가중처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장애인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 제1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장애인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와 유사하게 「형법」 제10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 법률로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있음.

<심신장애로 인한 범죄 처벌 특례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20조(「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9조(「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만, 안 제10조와 같이 장애인학대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행위태양, 심신장애의 원인·정도 등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의 제고와 책임주의원칙의 실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형법」 제10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반면, 안 제10조는 협박, 명예훼손·모욕 및 손괴 등 더욱 넓은 범위에서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자.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안 제12조)

제 정 안

- 제12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애인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장애인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안 제12조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이나 장애인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려는 안 제12조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유사 입법례로는 가정폭력처벌법,¹⁶⁾ 아동학대처벌법,¹⁷⁾ 성폭력처벌법 등

16)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징역형의 실행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가정폭력 행동의 진단·상담

2. 가정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7)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행(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이 있음.¹⁸⁾

- 안 제12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병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과 이수명령의 병과를 재량사항으로 할 것인지 의무사항으로 할 것인지는 장애인학대범죄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 안 제12조가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태도임.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은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 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18) **성폭력처벌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고소에 대한 특례(안 제17조)

제 정 안

제17조(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장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장애인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이 장애인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장애인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장애인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장애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장애인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 안 제17조에 따른 고소에 관한 특례는 고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에 대한 예외로, 장애인학대범죄의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며,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보임.
- 가정폭력처벌법,¹⁹⁾ 아동학대처벌법²⁰⁾ 등에서도 고소 제한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가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한 입법임. 장애인학대범죄

19)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20)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도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예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참조, 7페이지).

카.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제 정 안
제18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미성년자에 대한 장애인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장애인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③ 피해장애인이 장애인학대행위자와 동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배관계 아래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④ 제2조제3호아목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정안은 장애인 인신매매, 장애인학대살해·치사, 장애인학대중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²¹⁾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²²⁾ 성폭력 처벌법 제21조,²³⁾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²⁴⁾ 등에 따라 인정되고

21)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제59조의9(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22) 「형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있으며, 그 대상은 각각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임.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등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는 범죄의 중대성, 다른 법률의 공소시효 특례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정안은 공소시효의 정지기간을 “지배관계 아래 있는 경우 그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효의 정지기간의 그 시기와 종기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유사 입법례로서 아동학대처벌법은 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 등으로 공소시효의 정지기간을 명시하고 있음.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24)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타. 전담조사제 및 필수적 공판준비절차(안 제19조 및 제20조)

제 정 안
제19조(장애인학대범죄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장애인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범죄 전담 사범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장애인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범경찰관에게 장애인학대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인권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필수적 공판준비절차)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피해장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진술조력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조력인의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과 피해장애인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및 심리 진행에 관한 의견을 검사, 변호인,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해 전담조사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6조 및 제27조가 있음.

전담조사제는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속한 대응과 수사,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전담검사 및 사범경

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모든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해 전담조사제를 실시할 것인지는 다른 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공판준비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음.

□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 집중적이고 능률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성폭력처벌법 제40조의2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²⁵⁾는 필수적 공판준비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성폭력처벌법과 같이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공판준비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모든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해 적용할 것인지, 필수적 절차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기 전에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판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④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파.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조사·심리(안 제21조 및 안 제23조)

- 안 제21조 및 안 제23조는 피해장애인에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변호인 제도와 진술조력인에 관하여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사실상 같음.²⁶⁾

제 정 안

제21조(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6)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제 정 안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 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장애인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장애인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장애인학대범죄의 조사·심리) 장애인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장애인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장애인”으로 본다.

- 현재 성폭력범죄피해자와 아동학대범죄피해아동에게 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을 지원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취지는 형사절차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안 제21조 등에 대하여는 피해장애인의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중증도 등에 따라 의사전달 능력 등이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학대범죄의 유형이 성폭력범죄와 같이 특별한 보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하. 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등(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 정 안
제26조(피해장애인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장애인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피해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피해장애인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피해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애인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장애인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으로부터 격리(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장애인을 장애인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⑨ (생 략) 제27조(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장애인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 정 안

②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30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장애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傍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장애인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장애인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제 정 안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해장애인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⑨ (생 략)

☐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은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 조치로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을 긴급하고 신속하게 분리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가정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와 같이 가족구성원 등이 동일한 공간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 일반적으로 임시조치 등의 제도는 가정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인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범죄에 대하여 재발방지, 피해자 보호 및 가정 회복 등을 위하여 특별히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수반되는 조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학대범죄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학대범죄의 유형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임시조치 등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경찰청은, 안 제26조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학대현장 외의 장소에서도 응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의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 시에 피해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안 제30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경우 접근금지의 기준에 피해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 가정구성원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경찰청은 그 의견과 유사한 입법례로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음.²⁷⁾

27)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 7. (생략)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한편, 경찰청은 안 제30조제7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 통보 대상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거. 검사의 결정 전 조사(안 제34조)

제 정 안
제34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발달과정, 성장배경, 의사소통 방식, 장애 특성 등 피해장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안 제34조는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 등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사가 하는 기소 여부의 결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일정 범위에서 행위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⁸⁾

28)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취지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소년법 등 검사의 결정 전 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률도 행위자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하여 행위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⁹⁾

- 그런데 안 제34조는 행위자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피해장애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가 필요한지, 기소편의주의의 취지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비추어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9) **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 학대 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 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 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소년법**」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 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 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 원장 또는 소년 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 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너.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명령 등(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 정 안
제36조(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명령) 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학대행위자를 피해장애인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장애인학대행위자가 피해장애인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장애인학대행위자가 피해장애인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장애인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피해장애인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7. 피해장애인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8. 친권자인 장애인학대행위자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9. 후견인인 장애인학대행위자의 피해장애인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10.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제1항 각 호의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상담소 등과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법원은 제1항제6호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법정대리인을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37조(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36조

제 정 안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9호까지의 피해장애인 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피해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36조에 따른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 정 안

③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장애인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 안 제36조 등은 직권 또는 피해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는 피해장애인보호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과 달리 피해장애인이 직접 학대행위자와 분리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현행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³⁰⁾

다만,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보호처분과 연계되는 제도로써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임. 따라서 장애인학대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한지 여부와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0) 가정폭력처벌법의 경우 제3장(제55조부터 제55조의9까지)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제5장(제46조부터 제58조까지)에서 각각 보호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더.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안 제46조)

제 정 안
제46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사법경찰관리, 법원공무원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 제46조는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조사·질문(제25조제2항), 응급조치(제26조제1항), 임시조치(제30조제1항 각 호) 및 보호명령(제36조제1항 각 호)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협박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그 성격상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와 유사한 행위인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닐 수 있고, 「형법」의 단순공무집행방해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므로,³¹⁾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학대처벌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³²⁾

31)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 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 제2항·제3항,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1항각 호, 제36조 제1항각 호 또는 제47조 제1항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

□ 그런데 안 제4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범행 대상 중 법원공무원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은 제외하고, 장애인권인옹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한 폭행·협박 등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한 행위와 후자에 대한 행위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러. 과태료(안 제49조)

제 정 안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안 제49조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현장조사를 거부한 자,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등과 유사한 태도임.³³⁾

□ 경찰청은, 제정안의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조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고,³⁴⁾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업무처리예

33)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 제1항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34) 스토킹처벌법은 긴급응급조치 미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에 따른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긴급임시조치와 유사한 면이 있음.

소요되는 시간이나 행위자에 대한 위하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경우에도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1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